

2024년 제2회 예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예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예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I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인원	비고
합계			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상담사)	주민행복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상안전요원)	체육사업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미생물)	농업기술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 근무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필요시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예정 분야별 주요 담당 업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주요 직무내용	비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상담사)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상담사업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 · 그 밖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상안전요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수영장 내 안전관리 · 기타 수영장 관련 업무	
친환경농업바이오 센터 운영 (미생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미생물 생산장비 전반적 운영 (배양, 살균, 세척, 포장 등) · 미생물 생산시설, 장비 유지관리 · 미생물 분석장비 운영 및 관리 · 미생물 균수 분석, 연구 업무 등 · 그 밖에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업무	

4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기준
청 소 년 상 담 복지센터운영 (청소년상담사)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기준
청소년수련관 운 영 (수상안전요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수상안전요원 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 영 (미생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학위) : 미생물 학과, 축산관련 학과, 식품관련 학과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미생물 관련 근무(미생물 분석장비 운영, 생산시설 운영 등) 경력

- ※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분야별 별도 기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보수 수준

채용분야	채용등급	예정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1,290 ^{주1)}	-	"
청소년수련관 운영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 최초계약은 하한액 기준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으로 정함
- **주1)**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 상한액 51,29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으로 정함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확인
- 합격자 발표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예천군인사위원회 공고” 란에 공고
-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 55조제4항)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5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각 심사위원의 평정 성적을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합격권 내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불합격 기준

제2차 시험(면접)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55호))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예천군인사위원회 공고” 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 11. 20.(수) ~ 12. 4.(수)	
응시원서 접수	2024. 12. 2.(월) ~ 12. 4.(수) / 3일간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16.(월) 예정	
제2차 시험(면접)	추후 별도공고	
제2차 시험(면접)합격자 발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4. 12. 2.(월) ~ 12. 4.(수) / 3일간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까지

□ 접 수 처 : 예천군청 3층 총무과 행정팀

※ 우편접수 주소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 ☎ 054-650-608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우편접수 시 봉투 앞면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급 및 다급 (7급 상당) 7천원 / 라, 마급 (8,9급 상당) 5천원의 예천군 수입증지 부착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 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응시자격 중 세부요건의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자격요건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추가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징계현황 포함) 제출

※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재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10 기타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재공고 시행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같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예천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 (☎054-650-6083)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민행복과	054-650-8545
청소년수련관 운영	체육사업소	054-650-6424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농업기술센터	054-650-8173